

의장(디자인) 무심사 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윤 선 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차 례

- I. 들어가며
- II. 현행 의장무심사등록제도와 2003년 무심사
제도와 관련된 개정안
 - 1. 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 물품
 - 2. 무심사등록에 대한 요건심사
 - 3. 무심사등록제도와 관련된 복수의장등록출
원제도
 - 4. 무심사등록제도에서의 이의신청제도
 - 5. 무심사등록의장권의 효력
- III. 의장(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1. 무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
 - 2. 무심사등록에 대한 요건심사
 - 3. 무심사 등록제도와 관련된 복수의장등록
출원제도
 - 4. 무심사등록이의제도에서의 이의신청제도
 - 5. 무심사등록의장권의 효력
 - 6. 기타(다른 법에서의 보호)
- IV. 끝으로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번호 다음호)

III. 무심사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무심사등록출원 대상 물품

우리나라의 의장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을 전제로 하여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의장의 개념과 그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1997년 일부 품목을 무심사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

무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사항은 조기 권리화의 필요성과 부실권리 발생률이다.

조기 권리화의 필요성이 큰 물품으로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디자인 개발속도가 빠른 물품)과 등록 전 분쟁 발생률이 높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의장권 설정등록 전에 제3자의 무단 실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의장법상 출원공개 신청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출원공개 신청 물품에 관한 통계자료는 등록 전 분쟁발생률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건수가 많은 경우 분쟁발생률이 높은

물품이기는 하나, 무효심판의 경우 부실권리 발생률이 높은 물품으로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으로 확대함에 있어서는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실권리 발생률도 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을 확대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부실권리 발생률이 적은 물품을 우선적으로 무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등록결정률, 취소결정률 등에 관한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미적 외관인 의장은 그 대부분 조기권리화의 필요성이 크고 또한 라이프사이클이 짧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 심사대상물품과 무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된다.²⁸⁾ 결국 무심사등록출원 대상물품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존의 무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기준하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물품분류 B1(의복류)은 무심사 대상물품이나, B3(장식용핀 (B3-10), 머리핀, 헤어리본, 머리띠, 귀걸이 (B3-20); 목걸이, 넥타이 (B3-30) 등)는 유행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도 짧음에도 무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비교적 유행에 강하지 않고 life-cycle이 긴 품목인 M1-70(강선, 철사, 유자, 쇠사슬, 쇠소자) 등은 무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분류 중심으로 무심사품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중분류 이하

를 세분화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²⁹⁾

이 밖에 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물품으로 지정되면, 출원인은 심사등록출원의 절차는 진행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하여 절차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출원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산업계 동향을 파악하여 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으로 포함을 희망하는 물품과 및 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희망하는 물품 및 그 이유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³⁰⁾

그 외에도 “의장”에서 “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자체로도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도 저작권법 등과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무심사 등록에 대한 요건심사

무심사등록출원의 등록에 대한 요건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즉, 심사기간의 단축을 통한 조기 권리화와 부실권리 발생의 최소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명제는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쉽게 조화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즉, 실제 심사에 의하여 등록이 부실권리의 발생은 적어질 수 있으나, 심사기간은 길어져 권리화는 늦춰질 수밖에 없으며, 조기 권리를 위하여 심사사항을 최소화하는 경우 부실권리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부실권리의 발생이라는 희생을 예상한 것이고, 또 이에 대한 대책도 다각적으로 검토

28) 노태정, 위 논문, p. 94

29) 최중식, “의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설” AIPPI Korea Journal, 2000, 7, p.30

30) 윤선희외 4인, 위 보고서, pp. 94-95 재인용; 신재호, 위 논문, pp. 126-127; 노태정, 위 논문, p.94에서는 “현행 무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심사대상물품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하에 설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되고 있었기에 1997년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시 의장등록 전 형식적인 심사사항은 조기 권리화라는 무심사등록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방식심사 내지 형식적 심사만을 등록 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공업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과 같은 실제적 요건은 모두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통하여 검증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공서양속 위반 여부(제6조 제2호)는 예외적으로 구법에서도 등록 전에 심사함). 그러나, 2001년 개정법에서 무심사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바 모방의장이나 창작 가치가 현저히 낮은 의장 등 부실권리가 양산됨으로 인하여 의장등록무효심판청구건수가 35%로 늘어나고 있어, 일부 변리사들 사이의 의장무심사등록제도 폐지 주장을 받아들여³¹⁾ 이러한 형식적 요건에서 탈피하여 조기 권리화에 실질적 큰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상당 부분의 거절이유를 무심사등록출원의 등록 전 심사사항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실용신안법의 무심사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거절이유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여 형식적으로 등록 전 심사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조기 권리화”와 “부실권리 최소화”라는 어느 명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별도의 심사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가능한 많은(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등록 전에 심사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를 전제로 하여 먼저, (심사등록출

원의) 거절이유 중 그다지 긴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구별하여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현행(심사등록출원의) 거절이유를 심사에 필요한 시간적 측면에서 다음 4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³²⁾

- ① 별도의 인용자료 없이 출원인의 출원관련 서류의 검토만으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절이유³³⁾
- ②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인용자료가 필요하나, 별도의 서치(search) 절차 없이 특정된 인용자료만을 대상으로 비교·검토하여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절이유³⁴⁾
- ③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인용자료가 필요하고, 그 인용자료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심사관이 별도의 서치 절차를 통하여 인용할 수 있는 자료를 검색하고 검색된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절이유³⁵⁾
- ④ 제3자의 개입으로 갱점화되어야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결정될 수 있는 거절이유³⁶⁾

이러한 분류는 심사시 인용자료의 서치(search) 시간이 상당부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인용자료 필요성 여부와 검색의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31) 최중식, '의장법 개정안에 대한 공술' AIPPI Korea Journal, 2000, 7, p. 29

32) 윤선희 외 4인, 위보고서, pp. 97-102 재인용; 신재호, 위 논문, pp. 128-134.

33) 제6조(부등록사유) 제2호: 공서양속 위반, 제6조(부등록사유) 제4호: 기능성의장, 제7조(유사의장) 제1항 중 인적요건 및 기본의장의 요건, 제9조의장등록출원 제6항: 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 물품, 제11조 제1항: 1의장 1출원주의, 제11조 제2항: 물품류 구분에 따른 출원, 제11조 2: 복수의장출원시 절차적·형식적 요건, 제12조 제1항: 한 벌 물품의 성립요건, 제12조 제2항: 한 벌 물품의장출원의 대상물품, 특허법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조약위배(제26조 제1항 제4호).

34) 제5조 제1항 본문: 공업성(의장의 성립요건 내지 구체성 포함), 제6조(부등록사유) 제1호: 국기·국장 등과 동일·유사한 의장, 제7조(유사의장) 제1항 중 기본의장과 유사의장의 유사여부, 제7조(유사의장) 제2항: 선행하는 자기의 유사의장과 유사여부.

35) 제5조 제1항: 신규성(의장의 유사여부 판단 포함), 제5조 제2항: 창작(비용이)성, 제5조 제3항: 확대된 선원의 지위, 제6조(부등록사유) 제3호: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물품과 혼동 우려 의장, 제7조(유사의장) 제1항 중 타인의 선행의장과 유사의장의 유사여부,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선출원주의.

36) 제10조: 공유자의 공동출원; 제26조 제1항 제3호: 무권리자의 출원; 특허청(특허심판원) 직원의 출원

위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절이유는 이론적으로 심사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절이유로써 부실권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도 이를 등록 전에 심사한다 하여도 조기 권리화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도 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별도로 거절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7조 제1항과 복수의장출원을 인정하고 있는 무심사등록출원에서는 그 취지상 적용이 불가능한 제11조 제1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 전 심사사항으로 하고 있다.

②에 해당하는 거절이유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위하여 인용자료를 필요로 하지만, 별도의 검색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무심사등록출원의 등록 전 심사사항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선택의 문제이다. 2001년 개정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즉, 현행법에서도 2001년 개정에 의하여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성과 제6조(부등록사유) 제1호 및 유사의장의 기본의장과의 유사여부(제26조 제1항 제5호 마목)를 추가하여 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도 이들 요건을 등록 전에 심사하고 있다.

③에 해당하는 거절이유는 심사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절이유로써 조기 권리화라는 무심사등록제도의 취지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거절이유로써 자주 인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 전 심사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할 거절이유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④에 해당하는 거절이유도 단지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 정보제공 등의 절차 없이는 등록 전 완벽한 심사가 불가능하며, 등

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해결됨이 일반적일 것이다. 다만, 완벽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심사부담이 전혀 없는 거절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도 등록 전 심사사항으로 규정해 두는 것도 나름대로의 실익이 있다.³⁷⁾

그러나 2003년 개정안에서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심사부담으로 권리화가 지연되지 않도록 등록 전 심사사항에서는 별도로 거절이유를 추가하지 아니하고, 정보제공으로 해당 거절이유가 위에서 분류한 ②에 해당하게 된 경우 모든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는 “조기 권리화”와 “부실권리 최소화”라는 두 명제에 모두 부합하는 입법이라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개정안의 도입으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정보제공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부담과 권리화 지연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거절이유를 등록 전 심사사항으로 선언적 의미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와 다른 관점에서 절차적·형식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실체적 요건을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해결하는 완전한 방식심사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사실, 헤이그 협정에서는 방식심사제도를 장려하고 있어 헤이그 협정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방식심사만을 하고 있으며, 실체적 심사를 한다하여도 심사 기간 및 비용만 증가할 뿐 완전한 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등록 전 방식심사만을 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심사출원제도와 무심사출원제도가 병존하는 시스템에

37) 제6조 제3호가 등록 전 심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같은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서는 의장권의 실효성 내지 신뢰성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므로 무심사등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시도와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동일한 테마를 중심으로 유사한 형태가 다수 창작되는 복수 출원에 따른 출원인의 비용부담 및 불편 해소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함이다. 그리고 무심사등록제도의 취지는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디자인이나 개발 속도가 빠른 디자인에 있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무심사등록출원에 한하여 복수의장출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한하여 동일한 테마로 유사한 의장이 다수 창작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복수의장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원칙적으로 무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무심사등록제도하에서만 복수의장출원을 인정할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된다. 즉, 무심사등록제도와 무관하게 복수의장출원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복수의장출원이 요구되는 동일한 테마로 유사한 의장이 다수 창작되는 물품의 경우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디자인은 극소수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복수의장등록료 납부시 의장별로 포기하고 원하는 의장만을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복수의장출원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실질적으로 그 비용면에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행법하에서 복수의장등록출원시 출원료나 등록료에서 일정한 비용을 할인해주고 있으나, 이 정도의 비용상 혜택으로는 동일한 테마로 유사한 의장이 다수 창작되고 상업적으로는 이 중 극히 일부만이 성공하는 분야에 있어 현실적으로 의장출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의장법상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적 접근방법에 의한 보호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시키기도 한다. 사실 복수의장출원제도의 도입으로 동일한 테마로 창작되는 다수의 유사한 의장을 모두 출원할 수 있을 정도로 출원인 비용부담이나 불편이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³⁸⁾

현행법에서는 무심사등록 대상물품만이 복수의장출원이 가능한 점까지를 고려할 때 그 비용은 더욱 감액되어야 한다. 사실 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특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실제적 요건을 등록 후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하였고,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은 의장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

즉, 상당 부분의 심사비용을 출원인이나 관련 업계의 이용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 출원료와 등록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³⁹⁾

4. 무심사등록제도에서의 이의신청제도

현행법상 무심사등록제도는 저작권법적 접근

38) 요극인허 문제는 출원인의비용경감과 1의장1출원과 형평의관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오지 복수의장 1출원이라고 하여 등록료의 출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39) 윤선희외 4인, 위보고서, pp. 104~106 재인용; 신재호, 위논문, pp. 135~136.

방식이나 우리나라의 의장법상의 무심사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특허법적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등록된 경우 심사등록 의장권과 똑같은 차단효 있는 독점·배타권을 부여받게 되고, 심사등록출원에서 요구되는 모든 실체적 요건의 흠결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서 인정된 경우 의장권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등록 전에 실체적 요건이 판단되지 않는 실용신안법에서는 실체적 요건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평가제도”라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받기 전까지는 과실추정 규정을 배제하는 등 배타적 효력을 제한하는데 반하여, 의장법에서는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만 의존할 뿐⁴⁰⁾ 실체적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 없이도 그 효력 면에서 하등 차이가 없는 의장권을 부여하고 있다.

무심사등록의장권의 제한 없는 효력을 고려할 때, 등록 후 별도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평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의장법에서 이의신청의 역할은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의신청의 역할이 실용신안법상 기술평가절차 수준으로 강화되면,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도 완전한 의장권을 부여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⁴¹⁾

즉, 일정기간 동안 의장심사출원에서 요구되는 모든 요건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공고하

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하를 금지시키고, 2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사관은 청구된 이의신청이유를 포함한 모든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이의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심사등록의장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방안이다. 또한 당해 심사관에게 이의신청적격을 부여하여 심사과정 중 보호요건의 흠결을 발견하였거나 의심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전 심사사항이 아니어서 등록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부실권리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는 대부분 시장성이 없는 경우이며, 형식적으로나마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 공중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제한 없는) 의장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불필요한 심사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향후 상품화되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효심판을 통해 실체적 요건의 구비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일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요건에 대하여 의장권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것이나, 이것이 심사부담으로 작용되고 현실적으로 또 다른 형태의 권리지연의 결과를 야기한다면, 의장권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별도의 선언 없이 직권심사의 범위만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현행 이의결정의 형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를 정리하는 것도 한 방안이며,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되어가고 있는 실용신안법상 기술평가제도에서 필요한 상당 부분을 준용할 수 있으리라 생

40)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모든 거절이유를 이유로 거절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보제공제도도 실체적 요건의 충족여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만, 개정안에서 무심사등록출원의 출원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출원공개 없이 단기간인 무심사등록출원 심사기간중의 정보제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41) 현행법상 무심사주의의 도입은 원칙적 특허법적 접근방식에 기초한 것이며, 무심사등록된 의장권에게도 독점·배타권이 부여되고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들이 조기 권리화라는 현실적인 요청에 의하여 등록 후에 평가되는 것으로 유보되었을 뿐이다. 즉, 저작권법적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모방금지권만을 부여하는 무심사주의와 구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체적 요건 내지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법과 같이 침해소송 등과 같은 개별적 분쟁절차 내에서 해결하여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각된다. 다만, 이의신청기간 중 무심사의장권의 효력을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형식적으로나마 이의신청에 의한 실체적 요건에 대한 평가 후에 완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실용신안법에서와 같이 과실추정의 배제 등 배타적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보

다 타당할 것이나, 그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의 문제로 보아 현행법과 같이 이의 신청에 의한 취소결정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설정등록시부터 완전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여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리라 생각된다.⁴²⁾

발특2004/2

42) 윤선희외 4인, 위보고서, pp. 108~109 재인용; 신재호, 위논문, pp. 136~138



고래이용 해양오염 정화

고래는 오염된 바다에서도 다른 바다 생물과 달리 잘 견딘다.

그 이유가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의 수의학 교수인 모리 크레이그박사에 의해 밝혀졌다. 크레이그 박사는 고래에게 기름과 산성물질로 오염된 크릴새우를 고래의 먹이로 계속 공급해 주었는데, 아무 탈 없이 생활했다.

그리고 먹이도 하루에 1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이어서 이 실험을 통해 대규모 해양도 정화할 방법을

찾게 되었다. 고래의 위장은 독특한 소화기능이 있는데 독성물질을 파괴시키는 신비한 박테리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고래 위장에 있는 박테리아를 대량으로 양식하면 기름 유출 같은 사고가 났을 때 뿌려주어 오염지역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화학물질로 정화할 때 생기는 부작용이 전혀 없어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고래를 잘 보호해야 할 일이다.